

- 2025년 화성시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
2025년 제11회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5년 제11회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 11. 19.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구분	채용직급	채용분야	합격인원	최종합격자 명단(응시번호)	
공개경쟁	행정직 6급	문화예술	8명	B0100638	B0100658
				B0100682	B0100688
				B0100729	B0100781
				B0100839	B0100885
	기술직 6급	무대음향	1명	B0200712	
		무대기계	1명	B0300662	
		무대조명	-	적격자 없음	
		시설관리 (영선)	1명	B0500850	
		시설관리 (기계)	-	적격자 없음	
		시설관리 (전기)	1명	B0700654	
제한경쟁 (장애인)	행정직 6급	문화예술	1명	B0800679	



예비합격자 명단

채용구분	채용직급	채용분야	예비합격자 명단 (응시번호)	예비순위
공개경쟁	행정직 6급	문화예술	B0100851	예비1순위
			B0100891	예비2순위
			B0100777	예비3순위
	기술직 6급	무대음향	B0200766	예비1순위
			B0200803	예비2순위
		무대기계	B0300797	예비1순위
			B0300774	예비2순위
		시설관리 (전기)	B0700627	예비1순위
제한경쟁 (장애인)	행정직 6급	문화예술	B0800713	예비1순위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임용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25. 11. 19.(수) ~ 2025. 11. 21.(금) 16:00까지

■ 등록장소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 등록방법 : 방문제출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 ▶ 신원진술서 1부
 -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 가산점수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 응시자격 결격사유 서약서 1부
 -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각 1부
 - ▶ 통장사본 1부
 - ▶ 증명사진(3.5×4.5cm) 2매 및 이미지 파일(JPEG, PNG 등) 1매
- ※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은 recruit@hcf.or.kr로 송부



임용예정일

- ▶ 시설관리(영선, 전기) : 2025. 12. 8.(월)
- ▶ 문화예술, 무대음향, 무대기계 : 2026. 1. 2.(금)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등록기한 내 임용구비서류를 갖추어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대상자 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방문하지 않을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에서 제외됩니다.

- 추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는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반환 :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 임용 확정자 제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문의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 031-8015-8126